

5월 14일 목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 · 청 · 회

일시 : 1998년 5월 14일(목) 늦은 5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주최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후원 : 고려대 중학생회, 동덕여대 중여학생회, 서강대 중학생회, 서울대 중학생회,
수원대 중학생회, 아주대 중학생회/중대위원회, 연세대 중학생회, 이화여대 중학생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 · 청 · 회

일시 : 1998년 5월 14일(목) 늦은 5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 주최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 후원 : 고려대 중학생회, 동덕여대 중여학생회, 서강대 중학생회, 서울대 중학생회,
수원대 중학생회, 아주대 중학생회/중대의원회, 연세대 중학생회, 이화여대 중학생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 · 청 · 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 · 청 · 회

일시 : 1998년 5월 14일(목) 늦은 5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순 서

- 1부 • 개회사
 - 연대회의 소개 및 경과보고
 - 설문 결과 분석 발표
- 2부 • 학칙제정의 필요성
 - 학칙가안 설명
 - 학칙제정운동의 방향
 - 질의 및 토론

1998년 5월 14일(목) 오후 5시 : 1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성폭력 근절위원회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성폭력 근절위원회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성폭력 근절위원회

개 회 사

‘성폭력’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말해진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에게는 기표만 떠돌아다니고

듣는 사람에게는 지겨움만 맴돌 뿐이다.

너무나도 개인적인 나머지

이에 대해 말하는 자는

인류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가부장제에 적응을 못하는 자로 낙인찍히고

말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잊은 척 할 뿐이다.

거대하기로만 인식되었던 IMF라는 괴물은

서서히 우리들의 일상에 스며들어가 우리의 혼을 빨아먹고 있다.

정리해고가 부족해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은 집안으로 물러나고,

그나마 안전한 집안이라니 하지만 해고당한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화풀이한다고 한다.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여대생들은

졸업을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걱정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현실이 너무 부담스러워질 때에는

‘내 팔자려니’ 하면서 주저앉기도 한다.

아니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연장시키면서 사회가 ‘회복’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나

불평등과 모순이 가득한 사회로부터

안락한 가정이 여성들의 피신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지성의 전당인 학교도 여성들의 피신처가 되지 못한다.

‘교육’이라는 베일 아래에서 여성들은 공포에 떨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외모에 대한 무심한 말 한마디.

꿈을 무너뜨리는 교수의 ‘교육적 발언’.

귀엽다며 다가오는 원치 않는 손길.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끊임없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폭력이
여대생들을 더욱 더 힘겹게 한다.

우리는 말을 할 것이다.

아니, 소리를 지를 것이다.

대학이라는 현실 속에 발을 담고 서서

성폭력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고 그 움직임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질 때.

성폭력이라는 것이 대학과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5월 14일.

우리는 이화여대 중강당에 모여

가부장제 사회를 향해 소리 지를 준비를 한다.

만약 ‘객관적인’ 수치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밤을 세우면서 만든 설문지를 제시하겠다.

만약 법률을 좋아한다면 투박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담겨 있는 학칙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칙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개정운동에 관한 공동성명서

세계 2위의 성폭력 국가.

세계 경쟁력을 외치며 “성”을 상품화, 물화하는 자본과 가부장제를 옹호한 정권들이 만들어 낸 이러한 성폭력 세계화는 이 땅 여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IMF시기를 맞이하여 부당 정리해고의 칼바람에 일차적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해고로 생존권적 요구에 직면한 여성들은 매매춘등의 다양한 형태의 성을 매개로 한 서비스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성폭력의 사각지대로 알고 있던 대학이라는 공간 또한 이미 성폭력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무수한 성폭력이 일어 나고 있다. 서울대 신정휴 교수사건을 계기로 크게 알려 지게 된 대학사회 내의 성폭력은, 대상에 있어, 학생과 교수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과 학생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 공간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안에 우리 대학사회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학 성원들 모두가, 어느 공간에서건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인 여성들은 어떠한 방어기제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의해 이를 사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일회적인 일로 인식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따라서 사건이 끝나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것조차 힘을 잃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에도 계속 여러 학교에서 사건이 드러나는 현실을 볼 때 사건 중심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요망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사건의 해결이 이루어 지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여부가 성폭력 자체의 해결여부로 인식되며, 성폭력 사건해결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건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처와 고통을

혼자 감수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

이에 대학사회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을 요구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학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성원들에게 실제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학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여성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응 및 해결을 담보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사회안의 구성주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남성중심의 성담론을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의식지형의 변환, 그리고 나아가 사회안에서 여성권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진정한 자치규약으로써의 학칙 재구성의 논의들을 학원사회 안에서 환기시킴으로써 나가서 학원 자치운동, 대중운동을 견인해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번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1차 공청회를 신호탄으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 一, 설문지 등을 통한 학내 성의식과 여성권 확보를 유도해가는 등의 의식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각 대학마다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도 강력한 실천적 연대로 대응해 갈 것이다.
- 一, 자치규약으로써의 성폭력 학칙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싸움을 학단위와 함께 펼쳐갈 것이다.
- 一, 성폭력 근절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 오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학우 자신들이 학내 당당한 권력을 가진 주체적 대중으로 일어 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모든 대안적 실험들을 수행해 갈 것이다.

연대회의는 성폭력 근절을 향한 그 한걸음을, 여성권을 옹호하며 인간해방의 기치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며 대학 내의 가장 전투적인 여성운동 단위로써, 여성해방의 결코 꺼지지 않는 들불로 내딛을 것을 천/명/한/다.

고려대 여성위원회, 관악여성모임연대, 국민대 중어학성외, 동국대 중어학성외(준)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서강대 성정치위원회, 서울시립대 중어학성외, 성균관대 중어학성외
수원대 중어학성외, 이주대 중어학성외, 연세대 중어학성외, 영남대 중어학성외
외국어대 왕산 중어학성외,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홍익대 중어학성외

성폭력 관련 학칙제정 촉구를 위한 공청회에 보내는 지지글

성폭력 상담소

성

폭력은 온 나쁜 소수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산물로서 범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아는 바이다. 여성과 남성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가 학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본 상담소의 7년에 걸친 상담 경험에 의하면 학교 안에서 교수, 선배, 동료, 후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의 건수는 이미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학내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의 경우 학교 측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경우가 많아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더라도 대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사건의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한 학내 성폭력의 경우 대학이라는 특정한 장소 안에서의 권력관계를 통한 불이익을 피해자가 감수 해야하는 등 이중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 제정을 학생들 스스로가 요구하고 나섰다 것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우선 학생들 스스로가 학내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성폭력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은폐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객관적으로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회를 만들어 갈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 사회의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모아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지지의 뜻을 보내며, 이러한 학생들의 뜻이 학교 측과 일반 사회 안에 좀 더 많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연대회의

여성연대회의는요....

지난 96년 연대 사건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97년 3월 31일 9개 학교의 여성운동 단위들이 연대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이하 공대위)' 주최로 공권력 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서명 운동, 문화제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 후 '공대위' 모임에서 각 학교 여학생 단위들은 각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어려움과 한계라는 현실상의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비밀비재한 학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응은 그 동안 일회적이고,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성폭력 사건이 사적인 일이나 일회적인 일로 치부되는 상황 속에서, 사건의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여부가 그 종결인양 되어버리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매년 비슷한 사건에 매달려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단기적인 대응으로 끝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공동의 고민과 대책을 모색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 성의식과 성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보할 상시적인 기구에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여성연대회의는 이러한 동기에서 결성되었다.

97년 4월 다른 학교들에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가 여성연대회의는 구성되었다. 당시 국민대, 성균관대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 데, 여성연대회의는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동의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6월 학내 성폭력과 성의식 실태에 관한 실질적인 자료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대학=성폭력 박물관'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졌다.

97년 후반기부터는 성폭력 학칙의 의미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폭력 학칙 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된다. 이후 학칙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작업과 학칙 가안을 계속해서 수정,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98년 연대회의 참여 학교 중 12개교가 참가하여 학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칙 제정의 필요성과 활동을 알려 학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타대학의 참여를 위해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연대회의는 학칙 가안의 검토를 위해 여성학적, 법률적 자문을 구한 상태이며, 통신 공간 내에 성폭력 학칙제정에 관한 토론포럼을 개설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여성연대회의는 공청회 이후에 대학 내의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2학기 중에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17개 학교에서 동시에 한 주간동안 성폭력 주관을 가져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내 성폭력 사건에 결합하여 성폭력 사건을 여성의 시각으로 풀고자 하는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다.

활동보고

97년

4~5월

국민대와 성대사건을 계기로 연대회의의 필요성을 공유하였으며, 들꽃과 타학교 등 제안에 들어감 각 학교의 사업계획과 성폭력 사건의 대책 추이를 공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항고를 위한 고소자 모임 결과 공유

국민대 성폭력 진상규명과 교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대회(5월 8일)에서 연대회의의 공동성명서

6월

'대학=성폭력 박물관' 자료집 발간 & 기자회견과 집회(6월 4일)

성폭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성폭력 사례 수집, 정리한 내용

7월

공문작성과 발송 - 연대회의에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기 위해 여러 학교에 공문과 자료집을 발송함. 영남대 등이 연락을 해옴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고민

8월

청년학생 한마당 - 성폭력 대토론회 주최 : 비디오 상영과 발제

개강맞이 공동 유인물 제작 - '성폭력 학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

9~10월

소책자(그림책) 만들기 - 학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그림책. 현행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점,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반여성적 모습 등 묘사. 학칙에 의한 vision 제시

11~12월

학칙고민 - 학칙 가안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수정, 검토, 학칙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짐. 고대성폭력사건 공동 탄원서

이화여대-레게바 삼성맨 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98년

1~2월

학칙에 관한 전반적인 세미나, 논의 - 여성연대회의의 이월기간

행당동 성폭력 사건 관련 집회 및 성명서 발표

3월

성폭력 상담소내의 학내 지원팀과 연대를 모색 - 활동 방향 의논

4월

학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지하철 성추행 방지 방송관련 지하철 공사 측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서 참여

이화여대 온라인 성폭력 사건 공동 성명서

5월

통신 공간(나우누리) 내에 성폭력 학칙 제정에 관한 토론포럼 개설

성폭력 상담소내의 학내 지원팀과 성폭력 사건 실무자 교육(9, 10일)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위한 공청회(14일)

성폭력범죄를 당한다

성폭력을 당한 후
 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30분 밤을 새웠다
 그리고 곧장 산부인과 병원을 달려갔다



산부인과 의사와 물었다
 “성관계란 한 적이 있습니까?”
 성폭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대답했다
 “네.”
 의사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1

“혹시도 애인이...”
 이때 난 또 감정을 달리는 느낌이었다
 난 꼭 할거 아니게 임한데 왜지 싶도록 조처를 취해줄 것 같아
 증거로 남도록 진단서를 요구했다
 의사가 물었다
 “병원으로 굳어져서 있지 않으니 진단서를 다글래 가서...”


여기서 죄송하지 않고 나쁜 행위를 되풀이하고
 경찰서를 갔다

2

“저어... 성폭력을 당했는데요.”


“왜
 찾으신 거
 없어요?”
 “아직 봐
 내지 않아요...”
 “그고?”
 “있을 땐
 없어요...”

두 주에서 다른 경찰들과 두꺼지게 돌아왔다
 “아! 그러세요?”
 파견받은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경찰들이 물었다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비밀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들
 기억을 참으며 차근 차근
 설명해 나갔다

3

“교도장은 내보내지 마세요... 거기서 두 시간 모로질것으로”
 (경찰, 목격자도 없네요!)

도디어 감사를 만났는데 감사가 꼭 서둘러 물었다.
 “자료를 보면 가능한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해볼게요? 내일 아침에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할꺼예요? 그러고도 내일 아침에 확인하러 오셨다면
 증거가 뭐지 잡습니까?”


감도에게 동상 생긴 사람에게도
 알아들을 겨우했는지...
 물어봐도 없을까?
 “문질러서
 흔적 기록하
 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다들 흔적
 없어요...?”
 “문질러서
 흔적 기록하
 는 거예요?”
 “문질러서
 흔적 기록하
 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계속 놓으며 나는 대답했다
 “아 하지만 전 동하는 거지 없습니다.”
 감사가 뭐야 뭐야가 되었다.
 “그리고 여자의 사체는 30분 정도만 감시 중입니다.”

5

“당시랑요? 새벽 12번? 아니 여자가 그 시간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새벽에 다닐 곳이 없는 나라였나보다
 (그럼, 집앞에서 잠깐 당한 여자는 뭐야?)
 “그때 무슨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은 마지막 한마디를 나에게 던졌다.
 “다음부터는 예방하고 다녀주세요.”
 “오~! 매이닝 뭘함 거다.”
 “왜 내가 의심하든 뭐는 거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 봐서
 못다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과 눈 마주침)

“고맙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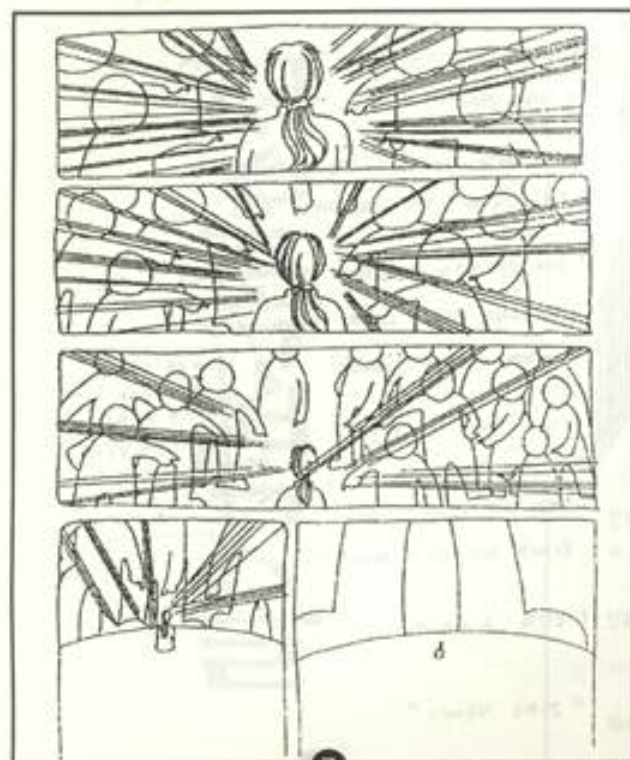
4

병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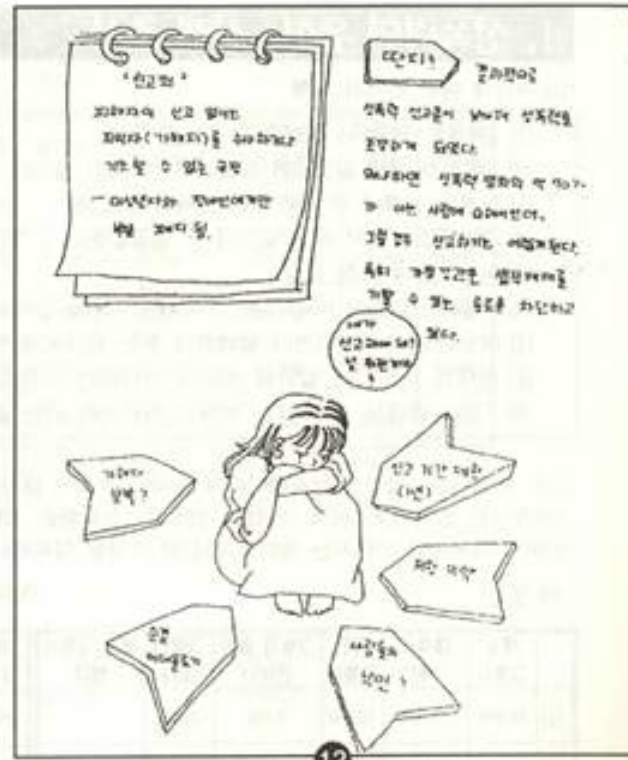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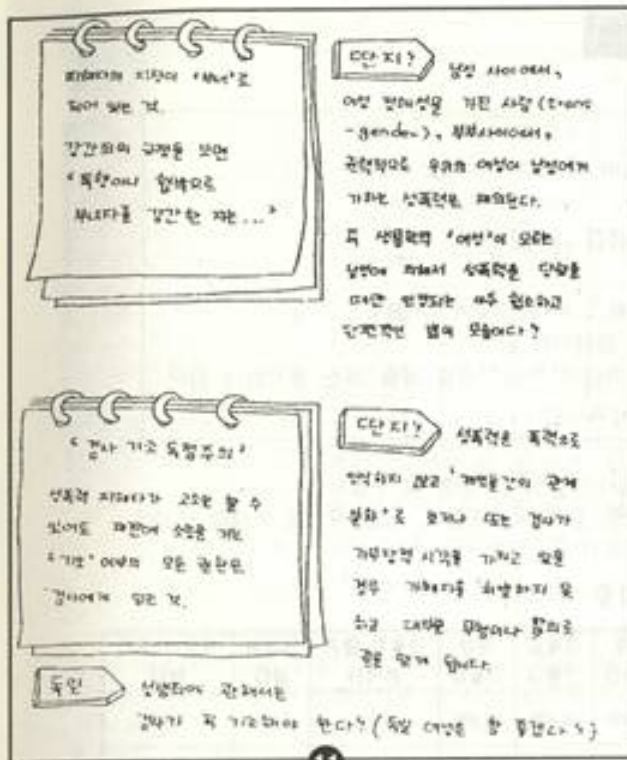


여기서 내 또 다시
 감정을 달리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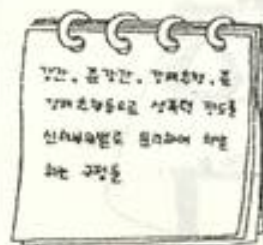
4



$\frac{1}{2} \times 10^{-10} \text{ m} \times 10^{-10} \text{ m} \times 10^{-10} \text{ m} = 10^{-30} \text{ m}^3$
 $\frac{1}{2} \times 10^{-10} \text{ m} \times 10^{-10} \text{ m} \times 10^{-10} \text{ m} = 10^{-30} \text{ m}^3$



영은 그 사회 생활을 할 생각이 만만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관념을 갖추어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필요한 일로써 영은 전념하고 있습니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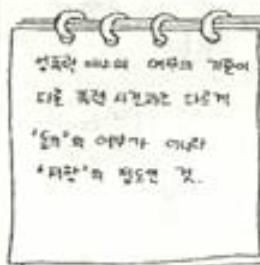
성지현, 유정현은 곧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미국의 경우 동급 지위를
 명예직으로 치부
 연봉 천만 원에 퇴직금과 고등
 기술로 승진한 경우 판단이다



인도적일 경우의 심판 다음 논의
현행에 CHN "대중"이 구한
피를 씻는 것.
95년 7월 28일 평양에서
"대중"에 관한 회담을, 서울
정규화 위원회와 2002년 1월
그리고

또는 장소를 지정 권리를 함양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업은
아파트 거래에 남성의 권리를
확립했다는 결론을 내기 쉽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나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수확량 관련할때, 수확량으로 인한
무기질을 선택한다. 분자량과함께
경도가 중요할때다.
여성의 'A'를 'D'라고
유기는 지방산과에 의해
지방산과에 의해

다음은 한국OAS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활동에 대해서
 그림, 직장을 위한 그리스 회사를 위한 몇몇 단락을 위한
 도해안임 ? 한국 OAS에 있습니다.

1. **성남을 세운다** 
(그런다) 성남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나 선택적 독점적 한계(한정성)

2. 새로운 판례를 연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신의 법을 깨닫는다.)

3. 다지궁악을 만든다.
(여기도 황도 전 사설이지만 크기가 웅장하다.)

그림 3-24 1차 선속 (동적) 추이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국민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덕성여대 여성위원회
서강대 성정치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서울여대 사회과학대학 학술모임 "날개달기"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수원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여성자치연합·총여학생회
영남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인천대 총여학생회
한국외대 왕산 총여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홍익대 여학생회

I. 성폭력의 유형, 사례 조사

1-1 여성에 대한 언어적 유형

-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
예 "여자가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니?", "여자가 많으면 일이 안된다."
- 여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
예 "엉덩이가 커서 애 낳았겠다.", "얼굴값한다.", "너 술집 나가니?"
- 여성다움에 대한 강요
예 "여자는 순종이 미덕이다.",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지.", "여자가 너무 나선다."
- 여성들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하는 음담패설 및 음란가요 등
- 여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대라는 이유로 개인의 능력, 자질 등을 과소 평가하는 발언
예 "여대 공대도 공대냐?", "여대는 간판따러 가는 곳 아니냐?"

1-1. 위와 같은 발언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여성용

남성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	50.2%	33.1%	12.9%	3.1%	0.6%	25.4%	38.5%	21.0%	9.3%	4.2%	1.2%				
□	69.1%	23.1%	5.2%	2.1%	0.2%	43.8%	33.1%	12.9%	5.8%	3.4%	0.4%				
□	43.8%	36.3%	15.9%	2.6%	0.9%	20.2%	29.8%	27.2%	14.1%	5.8%	2.6%				
□	64.6%	25.7%	7.0%	2.0%	0.2%	38.1%	30.8%	17.5%	7.5%	4.2%	1.6%				
□	50.8%	33.7%	11.2%	3.8%		25.0%	33.7%	26.4%	8.3%	5.0%	1.2%				

→ 1-1 언어적 유형의 성폭력에 대해 여성은 대체로 그렇다까지가 85%이상인 반면 남성은 65%정도이다. 남성인 경우 여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만 성폭력으로 인식한 반면, 여성은 5개의 언어적 유형에 대해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1-2. 위와 같은 발언을 학내 구성원들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에게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자신에게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성용

	있다	없다
□	60.2%	39.5%
□	55.9%	43.8%
□	72.9%	26.6%
□	70.0%	29.6%
□	57.9%	41.2%

→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64%나 되었다.

1-3. 만약 위와 같은 발언들을 들었거나 전해들었다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남녀 공학과 여대 비교 (남성용에는 없는 질문)
여대용

남녀공학의 여성용

	교수	교직원	전향 동기, 선후배	안면있는 동기, 선후배	모르는 사람	타학교 구성원	교수	교직원	전향 동기, 선후배	안면있는 동기, 선후배	모르는 사람	타학교 구성원
□	6.3%	2.9%	2.9%	4.9%	26.7%	40.8%	4.2%	3.1%	31.5%	34.0%	13.0%	8.6%
□	3.4%	0.5%	7.3%	6.8%	13.6%	39.3%	1.2%	0.9%	42.6%	31.5%	11.7%	6.8%
□	6.3%	1.9%	7.8%	7.3%	21.4%	50.5%	14.2%	3.7%	40.5%	42.0%	13.6%	8.9%
□	1.0%	0.5%	2.9%	8.7%	28.2%	38.3%	4.3%	1.2%	37.0%	41.4%	17.9%	6.2%
□	1.9%	1.0%	6.3%	8.3%	27.7%	52.4%	6.2%	1.2%	24.7%	27.8%	19.8%	12.3%

→ 교수가 공적 자리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함(10.4) 친한 동기, 선후배, 안면있는 동기나 선후배, 모르는 사람의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남

남녀공학의 경우 - 아는사람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여대 - 모르는 사람, 타학교 구성원가 높게 나타난다.

1-4.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혹은 전해 들은다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각각의 경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빈도를 적어 주십시오.) (여성용)

- ① 없다 - 4.9%
- ② 이제까지 한두번 정도 - 33.8%
- ③ 가끔씩 (한달에 한두번 정도) - 48.9%
- ④ 자주 (일주일에 여러번) - 8.9%
- ⑤ 매일 - 0.2%

→ 여성의 경우 한 두번 정도 - 33.8% 가끔씩 - 48.9 자주 - 8.9

반 정도의 여성이 한달에 두어번 정도씩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남성)

- ① 그냥 넘어간다 (1-6번으로) - 22.7%/59.9%
- ②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분을 푼다 (1-6번으로) - 24.3%/---
-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에 상의한다. - 1.4%/22.0%
- ④ 발언 당사자에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한다. - 43.8%/7.3%
- ⑤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 0.9%/0.6%
- ⑥ 기타 - 3.4%/9.5%

→ 남성의 경우 그냥 넘어가거나(50%), 조용히 이야기한다(22%)인 반면, 여성의 경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한다가 43.8%이다.

1-6. (1-6번에서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남성)

- ① 위의 행동들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8%/7.5%
- ②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 11.6%/5.8%
- ③ 불쾌하지만, 불편한 부위기를 조성할 것 같기 때문이다. - 27.3%/24.6%
- ④ 대응하려고 해도 그방법이 없거나 모르기 때문이다. - 7.5%/11.1%
- ⑤ 기타 - 2.1%/12.7%

1-7. 이 외 본인이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성폭력이라고 여겨지는 발언이 있었다면 그 발언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㉑ 남성에 대한 언어적 유형

㉑ 남성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

예) "기생오라비 같다."

㉒ 남성다움에 대한 강요

예) "남자가 왜 그렇게 출썩거리냐?", "남자가 그런 일도 못하냐? 사내 자식어....."

㉓ 다수의 여성들이 소수의 남성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발언 또는 행위

여성용

2-1. 위의 경우 중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의 번호를 써주십시오.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㉑ - 48.4% ㉒ - 64.9% ㉓ - 50.5%

2-2. 위와는 다른 경우로, 주위에서 목격한 남성에 대한 언어적인 성폭력 사례가 있다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용

2-1. 위와 같은 발언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v표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성적 소수자의 의사에 반해서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번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㉑	8.9%	16.3%	26.6%	26.8%	13.7%	7.3%
㉒	12.9%	19.4%	24.9%	25.2%	11.9%	5.8%
㉓	17.1%	32.3%	25.8%	12.3%	8.3%	3.6%

→ 2-1 남, 너 모두 남성에 대한 언어적 유형을 약 절반넘게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단, 남성의 경우 다수의 여성이 소수의 남성을 소외시키는 경우를 75.2%가 인식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남성다움에 대한 강요를 경험한 경우는 52.8%이나 이것을 성폭력으로 경험한 경우는 56.7%이다. 다수의 여성이 소수의 남성을 소외시키는 경우를 경험한 경우는 35.5%이나,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75.2%로 가장 높음 - 1. 남성은 직접적인 모욕이나 강요보다 모임(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2. 남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조롱, 남성다움에 대한 강요에 대해 여성의 동일한 항목에 비해 낮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2-2.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을 학내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자신에게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번호	있다	없다
㉑	33.7%	63.5%
㉒	52.8%	44.2%
㉓	35.5%	61.1%

→ 남성다움에 대한 강요를 상당히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52.8%)

2-3. 이러한 발언을 들었을 때 (또는 전해 들었을 때) 대체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그냥 넘어간다 (= 2-4번으로) 68.7%
- ② 이후 발언 당사자에게 발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한다. 16.5%
- ③ 즉시 발언 당사자에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한다. 7.1%
- ④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0%
- ⑤ 기타 () 5.8%

→ '그냥 넘어간다'가 70%로 대부분이었다.

2-4. (2-3번에서 ①번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대답해주세요)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성폭력적인 발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맞는 말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10.3%
- ②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 대범하게 넘겨 버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34.5%
- ③ 불쾌하지만 발언 당사자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13.1%
- ④ 사회적 통념이나 모임의 전통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4%
- ⑤ 대응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없기 때문이다. 2.4%
- ⑥ 기타 () 5.8%

→ 언어적 유형의 성폭력은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2-5. 이 외 주위에서 목격한 남성에 대한 언어적인 성폭력 사례가 있다면 그 발언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 유형 - ① 개인의 행동

- ① 여성의 신체를 감상하듯 아래 위로 훑어보거나 걷는걸 본다.
- ②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 ③ 여성 앞에서 음란물(누드사진, 포르노 만화, 비디오, 포스터 등)을 보거나 돌려보거나 부착한다.
- ④ 휘파람, 교성, 참을 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여성 앞에서 낸다.
- ⑤ 통신망(PC통신, 삐삐, 전화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다.
- ⑥ 여성 앞에서 옷을 입은 채로 성기나 성기 주변을 만진다.

또는 성기를 꺼내 놓고 보란 듯이 자위행위를 한다. (성노출증)

3-1.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v표 해주세요.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여성용

남성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①	55.9%	27.4%	12.9%	1.7%	0.6%	0.2%	10.9%	32.1%	27.6%	16.1%	8.9%	3.6%			
②	32%	28.8%	22.7%	12.6%	2.8%	0.5%	16.9%	28.0%	24.6%	17.7%	7.7%	4.8%			
③	55.3%	26.8%	10.0%	5.4%	1.5%	0%	37.7%	27.6%	15.7%	9.7%	5.4%	3.2%			
④	66.2%	22.2%	7.8%	2.5%	0.5%	0%	34.1%	33.9%	18.5%	6.3%	4.0%	2.6%			
⑤	81.0%	13.0%	3.5%	1.1%	0.5%	0%	54.2%	27.4%	10.1%	2.2%	2.8%	2.4%			
⑥	91.0%	4.0%	2.5%	0.8%	0.6%	0.3%	82.7%	9.5%	3.0%	0.6%	1.6%	2.0%			

→ 통신망에서의 성적표현, 성노출증을 남, 녀 모두 심각하게 인식 (80-90%). 시선의 폭력의 경우 남(43%)(대체로), 여(83.3%)로 확연히 다름

- 여성의 경우 시선의 폭력을 직접적인 피해로 인식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피해가 안 간다고 생각함

3-2. 위와 같은 행위를 하내 구성원들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당한적이 있습니까?

→ 여성의 경우 시선의 폭력을 당한 경우가 70%정도로 일 상적이라 할 수 있다.

번호	있다	없다
①	69.4%	29.4%
②	23.1%	75.7%
③	32.5%	66.5%
④	40.7%	57.7%
⑤	34.9%	63.4%
⑥	38.4%	58.5%

3-3.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각의 경우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남성용은 질문이 없음)

여대용

남녀 공학의 여성용

	교수	교직원	전한 동기.선후배	안경있는 동기.선후배	모르는 사람	타학교 구성원	교수	교직원	전한 동기.선후배	안경있는 동기.선후배	모르는 사람	타학교 구성원
①	2.9%	2.4%	3.9%	2.9%	56.8%	29.1%	5.6%	6.2%	27.2%	40.7%	59.9%	13.0%
②	0.5%	0%	0%	3.9%	8.7%	21.8%	0.6%	0%	11.1%	15.4%	6.8%	4.9%
③	0%	0%	1.0%	2.9%	13.1%	20.9%	0%	0%	21.0%	15.4%	12.3%	2.4%
④	0%	0%	0.5%	1.5%	41.3%	15.0%	0%	0%	6.2%	16.6%	31.5%	4.9%
⑤	0%	0%	0%	0.5%	37.9%	7.8%	0%	0%	1.9%	3.1%	32.7%	1.9%
⑥	0.5%	1.0%	0%	1.0%	43.2%	4.9%	0%	0.6%	0%	0%	0%	0%

→ 비언어적 유형의 성폭력일 경우 시선의 폭력(53.3%) 남녀공학의 경우 아는 사람에게 의한 경우가 많다.

3-4.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각각의 경우가 아니라 전체적인 빈도를 적어 주십시오.) (여성용)

- ① 없다 - 10.3%
- ② 이제까지 한두번 정도 - 44.7%
- ③ 가끔씩 (한달에 한두번 정도) - 32.8%
- ④ 자주 (일주일에 여러번) - 3.8%
- ⑤ 매일 - 0.2%

3-4 상당히 빈번하게 경험하는 편으로 나타났다.(80%)

3-5.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여대용/공학 여성용/남성용)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그냥 넘어간다 (3-6번으로) - 37.9%/35.5%/34.7%
- ②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분을 푼다 (3-6번으로) - 40.3%/33.8%/----
-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에 상의한다. - 2.9%/2.3%/----
- ④ 행위 당사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다. - 9.7%/16.1%/50.2%
- ⑤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 1.9%/1.8%/3.2%
- ⑥ 기타 - 2.4%/3.5%/9.3%

→ 남성의 경우 확실한 대응을 한다 혹은, 하겠다고 했다.(50.2%)

- 남성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성폭력은 그냥 무마하고자 하나, 가시적인 것(통신망 의 성폭력, 성노출증)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3-6. (3-6번에서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대/여성용/남성용)

- ① 위의 행동들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4.1%/1.0%/2.2%
- ②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 19.0%/22.3%/3.2%
- ③ 불쾌하지만,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기 때문이다. - 18.7%/21.8%/12.1%
- ④ 대응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없기 때문이다. - 26.3%/32.5%/6.5%
- ⑤ 같은 남자로서 이해가 가기 때문이다. - ----/----/6.2%
- ⑥ 기타 - 4.7%/2.9%/6.5%

→ 비언어적 유형의 성폭력에 대해 여성은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성의 경우 당사자와 다룰까봐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3-7. 이 외 본인이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성폭력이라고 여겨지는 발언이 있었다면 그 발언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 유형 - ③ 단체의 행동

- ① 단체, 모임에서 유독 여성에게만 학업이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잡일을 시킨다.
예 모교지에서 여자만 부엌일시킨다., 차 심부름
- ② 새터, 동문회 등의 단체 모임에서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다.
- ③ 여러 모임에서 여성을 소외시킨다.
예 술자리에서 시간이 늦었을 때, 여성이 가면 "분위기 썩다."고 하고, 끝까지 있으면 "넌 어떻게 된 여자애가?"라고 한다./대화에서 "이건 사나이들의 이야기야. 좀 빠져!" 한다.
- ④ 술자리에서 남자 사이에 끼어 앉거나 술시중을 돌게 한다.

3-8.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v표 해주세요.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여성용

남성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52.3%	34.8%	20.7%	8.3%	1.2%	0.3%	11.9%	31.7%	28.0%	10.5%	7.1%	3.6%
②	62.6%	23.0%	9.0%	3.1%	0.6%	0.2%	39.7%	33.5%	16.7%	4.4%	3.0%	1.4%
③	41.5%	34.6%	16.4%	5.4%	0.3%	0.2%	15.1%	29.2%	30.6%	14.5%	6.0%	3.8%
④	62.2%	24.0%	7.8%	3.4%	0.9%	0.2%	37.9%	31.0%	17.5%	6.9%	3.8%	2.4%

3-9. 위와 같은 행위를 학내 구성원들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용)
(1-2학년/3-4학년)

1~2 학년용

번호	있다	없다
①	38.6%	59.7%
②	32.3%	66.0%
③	38.1%	59.7%
④	31.2%	53.4%

3~4 학년용

번호	있다	없다
①	45.4%	51.2%
②	46.0%	56.5%
③	45.4%	49.8%
④	47.3%	42.5%

→비언어적인 성폭력의 경우, 단체는 개인에 대한 질문에 비해 피해 경우가 적음을 알 수 있다. 40%정도

3-10.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각각의 경우가 아니라 전체적인 빈도를 적어 주십시오.) ... (여성용)

- ① 없다 - 18.2%
- ② 이제까지 한 두 번 정도 - 34.5%
- ③ 행사 두 세 번에 한 두 번 정도 - 18.8%
- ④ 술자리나 새터, 모교지 등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 17.0%

→ 단체의 비언어적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정도도 낮고, 대응정도도 미온한 편이다.

3-11.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남성용)

- ① 그냥 넘어간다 (3-12번으로) - 27.1%/51.0%
- ②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분을 푼다 (3-13번으로) - 22.2%/32.7%
-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에 상의한다. - 5.7%/---
- ④ 행위 당사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다. - 19.4%/---
- ⑤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 2.9%/2.6%
- ⑥ 기타 - 2.6%/10.7%

3-12. (3-11번에서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성용/남성용)

- ① 위의 행동들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4.3%/7.3%
- ②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 12.4%/9.1%
- ③ 불쾌하지만,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기 때문이다. - 19.3%/14.3%
- ④ 사회적 통념이나 모임의 전통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 7.0%/0.1%
- ⑤ 대응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없기 때문이다. - 6.4%/6.2%
- ⑥ 기타 - 0.3%/5.0%

3-13. 이 외 본인이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성폭력이라고 여겨지는 발언이 있었다면 그 발언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④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 - ① 성희롱

- ① 의도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쪽으로 기대오거나 손을 댄다. 또는 자신의 성기를 몸에 접촉시킨다.
- ② 단체와 모임의 술자리에서 남학우가 불쾌할 정도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거나 안으려 한다. 혹은 술취한 척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몸을 더듬는다.
- ③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한다.
- ④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한다. 또는 신체접촉을 요구한다.

4-1. 위와 같은 행동이 어느 정도로 '심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한 성폭력'이라고 5, '약간 심한 성폭력'이라고 1로 계산해서 1부터 5까지 수치에 표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여성용

	5	4	3	2	1
□	77%	11.2%	1.8%	2.0%	6.3%
□	60.2%	26.6%	4.7%	1.7%	5.2%
□	63.2%	23.1%	5.4%	2.3%	4.9%
□	65.5%	28.2%	1.1%	1.4%	2.3%

남성용

	5	4	3	2	1
□	76.8%	15.3%	5.0%	1.0%	1.4%
□	47.4%	36.7%	10.7%	3.0%	1.6%
□	46.6%	34.7%	12.3%	5.0%	1.0%
□	68.3%	24.2%	5.6%	1.2%	0.2%

→ 성희롱에 대해 남, 녀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약80%이상) 여성은5, 남성은 4.5에 고루 분포해 있다. 앞쪽의 사례에 대해 남, 녀 모두 다소 인식이 적은편이나, 특히 남성은 훨씬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4-2. 위와 같은 행위를 하내 구성원들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당한적이 있습니까? (여대용/여성용)

술자리에서의 성적 접촉에 대해 여성의 경우 피해 경험은 많으나(40%), 성폭력으로 인식은 안하고 있는 편으로 보인다.

공학 여성용

	있다	없다		있다	없다
□	30.1%	66.5%	□	42.9%	56.8%
□	30.6%	66.0%	□	42.6%	53.1%
□	33.5%	63.1%	□	21.6%	63.6%
□	13.1%	82.0%	□	8.6%	34.6%

4-3.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각의 경우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여대용)

번호	교수	교직원	친한 동기.선후배	안면있는 동기.선후배	모르는 사람	타학교 구성원
□	1.0%	0.5%	1.5%	1.5%	28.2%	6.8%
□	0%	0%	1.9%	6.3%	4.4%	22.8%
□	0.5%	0%	3.4%	4.4%	8.7%	23.3%
□	1.5%	2.4%	0.5%	1.9%	5.8%	6.8%

→ 성희롱의 경우 의외로 교수나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이 많은데 이는 권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서 더 명확히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4-4.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각각의 경우가 아니라 전체적인 빈도를 적어 주십시오.) ... (여성용)

- ① 없다 - 22.8%
- ② 이제까지 한두번 정도 - 34.6%
- ③ 가끔씩 (한달에 한두번 정도) - 12.1%
- ④ 자주 (일주일에 여러번) - 10.6%

4-5.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용/남성용)

- ① 그냥 넘어간다 (4-6번으로) - 21.0%/27.4%
- ②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분을 푼다 (4-6번으로) - 17.2%/53.4%
-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에 상의한다. - 4.6%/---
- ④ 가해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다. - 23.3%/---
- ⑤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법적인 대응까지 포함) - 4.0%/6.2%
- ⑥ 기타 - 3.5/10.1%

→ 여성의 경우 확실히 지적한다는 의견이 23.3%이고, 남성의 경우 53.4%로, 남성의 경우가 더 많았다. 여성은 그냥 넘어가거나 주위사람과 이야기한다가 38%로 나타났다.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해 발언의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

4-6. (4-5번에서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성용/남성용)

- ① 실수로 그랬다고 생각하고 물어버리는 것이 마음편하기 때문이다. - 15.0%
- ② 상대가 교수나 선배 등 췌사람이어서 말을 꺼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 8.0%
- ③ 소문이 나면 주위에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 같기 때문이다. - 12.3%
- ④ 반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더 심한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보복할 것 같기 때문이다. - 4.6%
- ⑤ 대응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없기 때문이다. - 6.6%
- ⑥ 기타 - 2.0%

남성용

- ①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0%
- ② 여성들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5.0%
- ③ 오히려 피해자가 곤란해 할 것 같기 때문이다. - 9.9%
- ④ 상대가 교수나 선배 등 췌사람이어서 말을 꺼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 5.8%
- ⑤ 실수로 그랬다고 덮어주려 했기 때문이다. - 1.8%
- ⑦ 상대편 여성도 어느 정도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4.4%
- ⑧ 기타 - 1.4%

4-8. 이후 상대방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 (여성용)

- 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한다. - 6.3%
- ② 일부러 마주치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한다. - 5.5%
- ③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스스럼없이 대한다. - 26.3%
- ④ 소문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하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말하고 다닌다. - 1.2%
- ⑤ 이후에도 성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 0.2%
- ⑥ 기타 - 2.9%

4-9. 이 외 본인이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성폭력이라고 여겨지는 발언이 있었다면 그 발언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④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 - ② 강간, 강간미수

4-10. 학내 구성원,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강간 22명, 강간미수의 경우 11.5%, 강제 애무나 키스가 25.3%로 총 36.4%의 여학생들이 이와 같은 큰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11.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각의 경우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여성용)

번호	교수	교직원	전향 동기.선후배	안정있는 동기.선후배	모르는 사람	타학교 구성원
①	2%	1.2%	1.5%	1.1%	1.8%	0.5%
②	0.5%	0.5%	0.6%	1.2%	1.7%	1.1%
③	0.9%	1.5%	2.8%	2.1%	2.1%	2.1%

→ 충격!! 강간의 경우 교수에 의한 경우가 1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키스나 애무의 경우 아는 동기 및 선후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5%)

- ① 모퉁이에서 자고 있는데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다. 또는 강간했다(강간하려 했다.)
- ② 자취방 등 혼자 살고 있는 곳에서 기다리거나 찾아와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했다. 또는 강간했다(강간하려 했다.)
- ③ 모퉁이나 술자리 등에서 바깥 등 으스스한 곳에서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했다. 또는 강간했다(강간하려 했다.)
- ④ 동아리방이나 연구실, 강의실 등 학교 밀폐된 곳에 혼자 있는데 들어와서 강간했다(또는 강간하려 했다.)
- ⑤ 기타

4-12. 위와 같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경우의 번호를 모두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용)

① - 2.1%	② - 2.6%	③ - 3.5%	④ - 1.8%	⑤ - 2.0%
----------	----------	----------	----------	----------

→ 충격!!! 12.6%가 강간, 준강간등의 폭력을 경험한 걸로 드러 났다. (82/653)

4-13. 만약 위 문항에서 "⑤기타"를 표기하셨다면, 본인이 경험한 강간/강간미수 사례에 대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4.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없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용/남성용)

- ① 그냥 넘어간다 (4-15번으로) - 3.2%/9.9%
- ②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분을 푼다 (4-15번으로) - 4.3%/42.5%
-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에 상의한다. - 12.3%/----
- ④ 가해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다. - 12.1%/----
- ⑤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법적인 대응까지 포함) - 13.3%/34.1%
- ⑥ 기타 - 1.5%/9.7%

→ 여성의 경우 전문기관에 상담, 가해자에게 지적, 조직적 대응- 38%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 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접적 대응을 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길 경우 직접적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다.

4-15. (4-6번에서 ①,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처하는 (또는 대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실수로 그랬다고 생각하고 물어버리는 것이 마음편하기 때문이다. - 3.2%
- ② 상대가 교수나 선배 등 윗사람이어서 말을 꺼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 4.3%
- ③ 소문이 나면 주위에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 같기 때문이다. - 12.3%
- ④ 반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더 심한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보복할 것 같기 때문이다. - 12.1%
- ⑤ 대응하려고 해도 그방법이 없거나 모르기 때문이다. - 13.3%
- ⑥ 기타 - 1.5%

-----남성용-----

- ① 실수로 그랬다고 생각하고 덮어주려 했기 때문이다. 1.2%
- ② 상대가 교수나 선배등 윗사람이어서 자신의 위치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2.8%
- ③ 오히려 피해자가 난처해 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5.8%
- ④ 여성 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2%
- ⑤ 기타 () 1.6%

→ 여성의 경우, 공론화할 경우 주변에서 소외당하거나 가해자에게 보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보인다.

4-16. 이후 상대방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 (여성용)

- 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한다. - 2.3%
- ② 일부러 마주치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한다. - 3.1%
- ③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스스럼없이 대한다. - 12.7%
- ④ 소문내면 그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하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말하고 다닌다. - 18.1%
- ⑤ 이후에도 성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 1.4%
- ⑥ 기타 - 0.8%

→ 가해자의 태도중 협박, 과장, 왜곡(18.1), 스스럼 없이 대함(12.7%)등의 응답이 많아 가해

자들의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보여준다.

II. 성의식 조사

다음의 명제들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V표 해 주십시오.

(①- 절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다소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질문내용	①	②	③	④
5-1 성폭력은 여성을 차별하는 사고와 행동에서 비롯된다.	2.8%/7.5%	5.5%/16.5%	26.2%/47.0%	60.3%/27.4%
5-2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2.8%/2.2%	4.3%/6.0%	20.7%/36.9%	67.7%/54.4%
5-3 나는 대학에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6.4%/4.8%	12.4%/38.5%	42%/46.2%	34.2%/9.5%
5-4 대학에서 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23.1%/4.4%	5.8%/19.2%	22.1%/36.9%	40.4%/38.5%

→ 남성의 경우 대학에서의 성폭력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여줬다. (55.7) 특이한 것은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성에 대해 남녀공학의 여성은 응답률이 낮은편이었고 여대의 경우 91%로 높았다.

III. 성폭력 학칙 제정에 관하여

6-1. 위에 예시를 든 상황들을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학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용/남성용)

① 예 (6-3번으로) - 63.6%/76.2% ② 아니오 (6-2번으로) - 4.0%/20.8%

6-2. (6-1번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학칙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용/남성용)

- ① 성폭력 문제는 학교 차원을 떠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6.7%/3.8%
- ②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해서 처리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이다. - 3.4%/2.4%
- ③ 사소한 일까지 성폭력 학칙에 적용되면 평소 생활이 매우 혼란스럽고 번거로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7.8%/4.4%
- ④ 학칙이 제정되면, 학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성폭력이 일어나는 근 본적이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 5.1%/5.8%
- ⑤ 학칙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상황에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12.1%/5.2%
- ⑥ 기타 - 0.3%/1.6%

→ 학칙의 현실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거나 학칙의 한계를 지적하는 응답이 많았다. 여성의 경우 일상적인 폭력까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칙제정시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6-3. 만약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 진다면,

누구의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용/남성용)

- ① 교수 - 16.2%/1.4% ② 교직원 - 7.7%/0.4%
- ③ 학생 - 22.1%/30.4% ④ 성폭력 관련 학외 전문가 - 8.7%/7.3%
- ⑤ 교수와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가 똑같은 권한하에 만들어야 한다. - 36.8%/47.0%
- ⑥ 기타 - 0.6%/2.8%

→ 학내의 모든 주체 및 전문가 모두가 참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그러나 학생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만약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 진다면,

6-4-1. 어느 정도의 성폭력까지 징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용/남성용)

- ① 언어/비언어/물리적인 성폭력 모두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한다. - 46.9%/19.2%
- ② 비언어/물리적인 성폭력만 징계 대상으로 하면 된다. - 26.3%/34.5%
- ③ 물리적인 성폭력만 징계 대상으로 하면 된다. - 13.8%/27.4%
- ④ 감간, 감간미수 수위의 성폭력만 징계해야 한다. - 5.1%/6.0%
- ⑤ 기타 - 2.1%/6.7%

6-4-2. 현실적으로는 어느 수위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용/남성용)

- ① 언어/비언어/물리적인 성폭력 모두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한다. - 27.1%/6.9%
- ② 비언어/물리적인 성폭력만 징계대상으로 하면 된다. - 20.2%/23.8%
- ③ 물리적인 성폭력만 징계대상으로 하면 된다. - 23.0%/40.7%
- ④ 감간, 감간미수 수위의 성폭력만 징계해야 한다. - 11.5%/21.6%
- ⑤ 기타 - 0.8%/2.8%

→ 징계대상에 있어 여성은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남성은 비언어, 물리적 성폭력만 징계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6-5. 만약,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진다면,

징계 유형은 어떤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여성용/남성용)

- ① 제적, 휴학 등 학업을 제한하는 방법 - 48.1%/31.0%
- ② 일정기간 여성 단체에 봉사하는 등의 봉사행위 - 55.1%/47.6%
- ③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58.3%/59.9%
- ④ 일정기간 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 27.6%/29.0%
- ⑤ 기타 - 6.9%/6.2%

VI. 성폭력 관련 학내 기구에 대하여

7-1. 학내에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거나 전담하는 기구가 학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용/남성용)

- ①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지면 않아도 된다. - 8.9%/9.1%
- ②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져도 있어야 한다. - 37.2%/31.9%
- ③ 성폭력 관련 학칙의 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필요하다. - 42.7%/46.6%
- ④ 성폭력 관련 학칙의 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필요하지 않다. - 2.0%/6.5%
- ⑤ 기타 - 0.6%/2.4%

7-2. 만약 성폭력 관련 전담기구가 학내에 설치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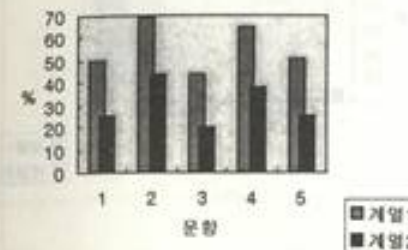
그 위상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용/남성용)

- ① 학교에서 지원하는 성폭력 담당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식 기관으로서의 본부기관 - 25.3%/11.1%
- ②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은 받되, 인적구성은 정문가와 교수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자치 기관 - 27.7%/14.7%
- ③ 재정은 학교에서 지원하며, 구성은 전문가와 교수, 학생으로 이루어진 본부 기관 - 29.9%/38.7%
- ④ 재정은 학교에서 지원하며, 학생과 교수만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자치 기관 - 9.3%/24.6%
- ⑤ 학생만으로 이루어진 자치기관 - 0.3%/5.6%
- ⑥ 기타 - 1.1%/2.4%

→ 여성의 경우 전문가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남성은 학생의 참여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계열1 : 여성, 계열2 : 남성

문항1-1 '매우 그렇다' 비교



계

1

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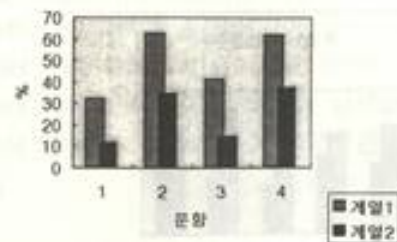
266

267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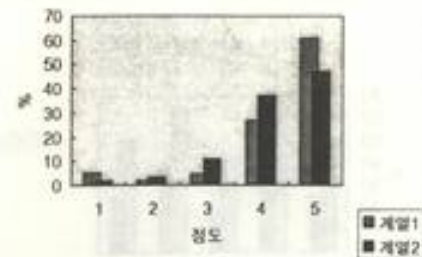
계열1:여성, 계열2:남성

문항3-5 '매우 그렇다' 비교



계열1:여성, 계열2:남성

문항4-1, 소문항2



계열1:여성, 계열2:남성
주제 소문항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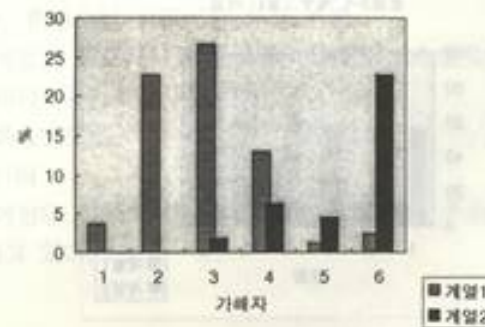
문항6-3



계열 1 : 여대, 계열2 : 남녀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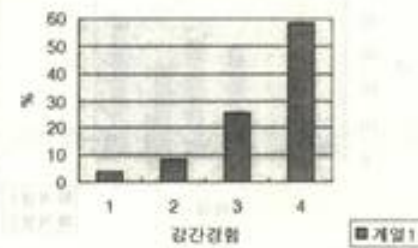
가해자 1: 교수, 2:교직원, 3:전원동기/선후배, 4:전원있는 동기/선후배, 5: 모르는 사람, 6:학학교구성원

문항4-3, 소문항2 (여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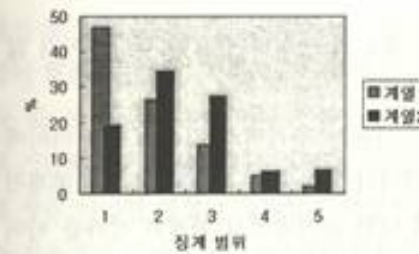
계열1:여성, 계열2:남성

문항4-10(여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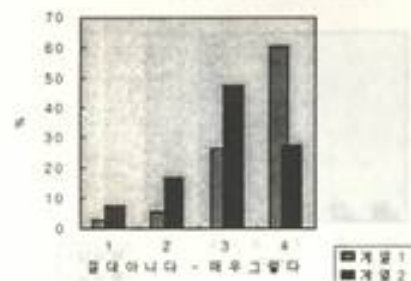
계열1:여성, 계열2:남성
장제범위 소문항 1-5

문항6-4-1



계열1:여성, 계열2:남성

문항 5-1



계열1:여성, 계열2:남성

문항 5-2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의의성에 대하여

- 학칙제정운동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단상 -

0. 들어가며

한국대학신문에 의하며 지난 97년 대학가의 10대 뉴스-핵심 사안-중의 하나가 성폭력 사건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한편으론 병산의 일각일 지언정 대학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 표현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이전에도 역시 무수히 존재했던 대학내 성폭력의 문제가 현시기 대중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사적이고 은밀한 성의 영역이 대학의 거대한 가부장적 구조를 뚫고, 그 균열의 틈새를 발견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까지 '성'이라는 영역이 던져줄 수 있는 환상과 신비로움이 자극적으로 이미지화, 미디어화되어 대중들의 호기심을 유발한 것 역시 현 시기 성폭력의 문제가 가시화되는데 한몫(?) 했을지 몰라도 무엇보다 90년대 중반 대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의 성폭력 사건 해결과 그 과정에서 여성적 입장에서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는 오늘의 현실에 중요한 대답돌이지 않았나 한다.

앞의 서두는 우리끼리 자족하자는 의미에서 적었다라기 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현재적 조건에 대한 분석속에서 한계와 성과를 이어 올곧게 학칙제정운동이 가지는 그 의미성이 충분히 발휘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성이 학칙제정운동의 실질적인 투쟁속에서 더욱 풍부화될 수 있길 바란다.

글의 순서는 성폭력의 문제가 왜 여성운동에 있어 중요한 쟁점일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어 학칙제정운동에 관심을 갖게된 배경을 살핀 뒤 구체적으로 현재의 학칙제정운동이 가지는 의의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1. 왜 성폭력의 문제가 여성운동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쟁점인가?

여성권 확보는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에서부터 시작이다.

성의 역사가 남성지배권력에 의해 여성에게 억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진 것에 대하여 여성권은 성의 불평등과 성의 억압을 극복하고자하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략이다. 즉,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억압에 대한 해석과 여성에게 해방적인 담론제시를 통하여 구체적인 여성운동의 과제와 행동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이다. 성의 억압과 불평 등에 대한 진단은 언제나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규정되어지고, 그 해결 방향성 또한 남성적 시각에 의해서 재단되어져 오는 역사 속에서 억압과 불평등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은 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현실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억압이 현존하는데서 그 존재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여성운동은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과 성은 이러한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설정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라는 몸이 언제나 남성의 소유물로, 여성의 인격과 유린된 성애화된 육체로만 읽혀지면서 배제되어왔기에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주인은 바로 여성자신이라는 관점속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남성 지배적인 구조와 문화를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한 것이 바로 빈번한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과 구조이며, 여성의 몸과 성 즉 인권이 유린되는 전후의 장인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은 여성인권의 사각지대 성폭력의 현장으로부터 저항

할 여성들의 당당한 주장이며 여성권의 핵심이며 가장 기본이되는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2. 학칙제정운동에 관심을 갖게된 문제의식

대학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무수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간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속에서 중요한 성과지점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우조교 싸움의 한계속에서 학칙제정에 관심을 갖게된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1) 도덕적 의무외에는 대학당국을 우조교 사건 해결에 나서게 할 근거가 없었다 2) 학생회의 대응은 일회적,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지 못했다 3) 인식전환 촉구와 해결해달라는 구절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4) 유사한 사건이 여러건 계속되었음에도 언제나 논의는 처음부터 시작하고 대응은 주먹구구, 제자리 걸음이었다 5) 1년이상 계속되는 싸움에서 운동의 소재, 방향의 모색이 필요했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학칙제정이 성폭력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적 장치구축으로까지 나아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발생한 사건의 해결을 넘어서 근절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학내 성폭력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되었던 연대회의 활동의 연장에서 자연스럽고, 그리고 절실하게 그 필요성이 인식되었던 것이다.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운동의 의의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 형성과 세력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은 단순히 처벌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다. 여성주의에 입각하여 성억압과 불평 등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과 해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 배제적이고, 억압적인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지배담론을 해체하는 과정과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담론 재구성의 과정은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즉, 여성적 관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담론 재규정속에서 여성권의 하나인 여성의 성적자율권 확보의 의미성으로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담론이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위한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학칙제정운동의 의미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새로운 담론은 그에 따른 문제들과 의미성이 형상화된 구체적인 '장치'가 존재해야만 사회화되어 세력화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상징적인 형태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이 형상화되도록 하는 운동이며, 투쟁인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그 일차적인 주제와 조직이 여성단위이며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정의를 대중적으로 관철시키고 그것의 근절을 목표로하며 여성주의적인 방식을 지향한다. 이러한 학칙제정운동은 여성운동의 발전적 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써 그 의미를 가질수 있다.

여성운동 단위의 세력화 및 대학사회 여성운동의 대중적 세력화

과거 주변적인 운동으로 존재했던 여성운동은 나름대로의 전략과 독자적인 활동의 부재, 이론또한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그러한 취약한 운동지반안에서 막 태동하려는 여성운동에 대해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통일된 사상적 지반(노동/통일이라는 중심운동)을 통해서 여성운동에 대한 성급한 재단과 가치절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학생운동과 주변운동으로의 여성운동이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모든 해계모니를 쥐고 있는 학생운동이 여성운동과 동등한 연대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시뻘잡은 일이었겠는가? 그래서 당연하게도 학생운동에 관심있는 여학생운동집단은 학생운동에 복무하는 부문운동으로서 역할을 외치며 고립되었다.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의 보이지 않는 불신과 여성운동의 고립성의 문제는 과거 학생운동의 이념과 구조속에서 잉태된 결과이다. 학생운동의 새로운 담론이 폭발되고 있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모색해야 하는 현재 주변운동(여성운동)의 활성화 과정과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은 동일한 지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모색의 과정을 진척시켜야 한다. 더욱이 여성운동은 가장 주변화되고 배제되어 왔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과거 학생운동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부위인 것이며 이것은 곧 위의 동일한 지향점을 향한 길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운동의 구조와 이념에 대한 여성운동의 반발은 여성운동을 특유의 서클주의와 문화주의로 경도하게 만들었다. 서클주의는 여성운동을 담론적이고 자족적인 수준

에 머물게 했고 문화주의는 기존의 집회를 퍼포먼스로 대체하고 문화상품에 대한 분석을 더했을 뿐, 여성과 대학생 삶의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것의 변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기존여성운동의 성과를 폄하함도 아니며 단적으로 여성운동단위만의 문제로만 한정시켜 이야기될 부분은 아니다. 단지 기존 운동에 대한 반발이 낳은 역효과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그 비판지점과 방향성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함이다.

기존의 대중을 정치로부터 소외시켰던 기존의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기방식에 있어 여성운동단위의 이전과는 다른 대중운동방식이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그 성격상 여성운동이 더 이상 서클주의와 문화주의에 갇혀 있지 말 것을 요구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소수의 입법투쟁이 아닌 대중의 집단적 정치화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대중운동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운동이 지니고 있는 남성적 대중운동에 대한 비판력과 여성적 방식의 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은 대중운동이 소멸한 시대에 새로운 대중운동은 중요한 전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성운동의 대중적 세력화와 기존운동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극복을 통한 새로운 운동양태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점으로서 위치지어지는 것이다.

대학사회 자치실현 과정으로서의 의의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대학의 운영이 구성원들의 동의의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학자치 실현의 한 과정으로 그

의미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비민주적인 구조와 반여성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공동체내의 자치규약의 제정과 공동체문화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운동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대중권력에 기반해 모든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사이에 자유로운 소통과 연대를 운영원리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적 삶의 방식에 대한 모색과 현실화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사안별, 수공업적 해결을 넘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물적 구축

기간에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의 과정속에서 아마추어적인 대처방안은 실제적인 성폭력 발생시의 대응을 무력하게 했고, 사건이 대중적 쟁점화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책임단위와 물질적 장치의 부재속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대중들로부터 외면되고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며 결국 개인의 문제로 잊혀져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칙제정운동은 실제로 물리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성폭력 해결을 넘어선 근절을 위한 흐름으로 상승될 수 있으며 성폭력 문제의 인식전환에 상징적 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종이조각에 그치는 학칙이나 눈가리기식의 제도적 장치에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운동단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투쟁은 필수적인 것임을 잊지않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성 모색에 대한 제언

0. 들어가며

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 상징이 주는 의미와는 상반되게도 그 자체로 성폭력이 만연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폭로했다.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많은 성폭력사건들이 대학에서 벌어져 왔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96년 이후 성장한 여성운동단위들과 피해자의 용기에 의해 논의의 장이라는 햇빛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폭력은 사적이라는 공간 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폭력 사건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커녕 왜곡되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되었다.

여성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여성으로서 이 사회의 올곧은 주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치절한 좌절을 가져오는 성폭력에 대해 이제 그 본질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과정으로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사고되어야 한다.

1. 운동의 목적

(1)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언어를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기 위한 운동이다.

그간 성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이기에 오히려 이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았다. '여자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혹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위해선 참아내야 하는' 어떤 일로 치부되며, 여성은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외롭게 혼자만 병어리 냉가슴 앓듯 살아야 했다.

이에 비해 현재에 이르러-그래도 전에 비해-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공론의 장에서 빛을 받고 있다. 성폭력은 많이 알려지고 있으며,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됐을 때, 피해자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지리하고 괴로운 싸움을 겪어야 한다. 누구나 성폭력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폭력 사건은 제기되는 순간부터 그것의 정당한 해결보다는 이일이 과연 성폭력인가에 대한 논쟁에 먼저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는 많은 꼬리표들이 따라 붙는다. '어쩔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사랑하니까', '유혹에 못 이겨', '그녀도 원했다고 생각해서', '분위기 때문에', '몰라서' 등등의 수식어 항상 성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한다. 여기서 나열한 여러 수식어들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이며 각각이 뿌리깊은 이데올로기와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즉, 생물학주의와 남성이 성욕이 강하다는 속설, 데이트 강간,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편견, 여성의 'no'는 'yes'라는 오해, 부정적 의미에서의 공동체주의, 성에 대한 지독한 무지함 등등.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겪은 고통은 사장되어 버리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이번 연대회의의 설문결과가 보여 주듯이 여성들은 일상을 바라보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 자체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상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성폭력 학칙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누구나 성폭력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이 아니다. 성폭력은 일상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모든 것들로 확장되어야 한다.

(2)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은 폭력적인 사회에 대해 대안적 자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이다.

여기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임의로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과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을 구분하고자 한다. 사실 이 둘은 정확히 같은 활동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 드러나야 한다. 이 둘이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자치운동은 언제나 구호로서만 혹은 억압에 대한 즉자적인 저항으로서만 존재해 왔다. 어느새 자치는 선거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주요한 레테르가 되었다. 그러나 과연 학생자치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는 서술되어지지 않았다. 자치는 본부와 교수,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 현실화되었을 때만, 이전의 '학원 자주'의 대응으로써 등장했을 뿐이다. 학생은 자신의 자치권을 언제나 침탈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었다. 자치는 동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부드러운 단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로서의 자치'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형해화되어 왔다. 자치가 '학생'이라는 범주에 갇힘으로써 그 급진성이 퇴색되어 버린 현실에 대해서는 <Critique> 4호의 [학생운동, '학생'에 갇힌 운동]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사실상 선거에서 '학생자치'라는 이름 아래 제시되는 공약들은 그것을 '학생 복지'라는 이름으로 대체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자치를 위한 저항 그 자체,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은 진정 단 한 순간도 포기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없이는 자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학생운동이 보여준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이 즉자적이고 수세적이었다는 데 있다. 즉자적이고 수세적인 자치권 수호의 한계는 명확하다. 열린 공동체 내부의 자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성원리,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즉자적이고 수세적인 자치운동은 공허해지고 만다. 우리는 수호해야 할 자치권이 무엇인지 모르며, 왜 그렇게도 자치권이 소중하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치권은 수호될 지언정 구성되거나 주장되지는 못했다. 외부의 파시즘을 상대로 한 우리의 투쟁은 항상 우리 내부의 파시즘으로 인해 저지되고 약화되었다. 사실 외부의 파시즘과 내부의 파시즘은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외부의 파시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은 반드시, 반드시 내부의 파시즘을 소멸하고 다른 질서의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 둘은 정확히 같은 활동 속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둘이 분리되는 순간 어느 한 쪽도 힘을 가질 수

없다. 대학사회의 대의제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로서의 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80년대 당시, 대의제민주주의의 현실화로서의 학생회 건설 투쟁은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대의제민주주의 자체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의제 학생회 건설 투쟁은 다음과 같은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첫째, 당시에는 사회가 형식적으로도 대의제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사회는 상대적인 진보성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그것은 대의제민주주의라는 구성원리를 현실화시키는 운동과정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87년 운동의 성과로 형식적이거나 정치영역에서는 대의제민주주의가 현실화되었고,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거쳐 이제는 김대중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원 민주주의의 상대적 진보성은 완전히 박탈되었다. 오히려 갈수록 변질되는 선거의 모습과 올해 들어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는 본부에 의한 총학생회 불인정은 대학 내 민주주의가 사회의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학생회의 건설이 완성되고 그것이 더 이상 운동하기를 멈춘 90년대에 학생회의 대의제민주주의는 이제 그 자체가 변해되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회 운위와 단학대회, 전학대회에서의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논의구조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허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대의제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로서의 자치, 대안적 사회의 구성원리로서의 자치를 현실화시키는 항구적인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공동체 내의 자치규약의 제정과 공동체문화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이 현실화되는 첫 번째 실험이 될 것이다. 성폭력학칙 제정운동은 대중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권력을 전유하는 가운데, 모든 폭력과 파시즘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자신들이 구성해내며,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하고 신장시키는 과정 속에서만 온전히 진행될 수 있다.

(3) 성폭력의 피해자는 모든 인간이며, 여성운동의 주체도 모든 인간이어야 한다

현 사회의 성폭력적 구조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성적소수자들을 막론하고 전 구성원에게 차별적 박탈을 수행한다. 이러한 박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 첫째, 성폭력의 대상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남성의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주로 직장 상사나, 학교 상급생, 군대 상관 등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희화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 권력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사실 형용모순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성애와 폭력성을 연결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이 대상의 특성과는 무관한, 고립된 권력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치명적이다.

둘째, 성폭력 가해자 역시 성폭력의 피해자이다.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로 인한 피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피해'라고 말해줄 수 없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가해자의 피해'를 '피해자의 피해'보다 우선하여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그 해결

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성폭력을 행했다는 사실은 가해자 인격의 파탄을 증명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단죄가 항상 성폭력 그 자체가 아닌 성폭력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로 현상하는 현실에서, 가해자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셋째,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잠재적인 성폭력의 가해자로서의 모든 남성은 오히려 가려진 존재이다. 남성은 따뜻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교육받지 못했다. 경쟁을 위해서,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남성은 그것을 거부하도록 강요당했다. 남성은 여성을 소통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속물화된 성적 대상으로서만(1)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반대쪽 편향으로 여성을 신비화시키는 경향도 많다. 그러나 이 두 시각은 사실 다르지 않으며 항상 공존하기 마련이다. 이 두 시각 모두 여성을 소통할 수 있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확히 동일하며 각각의 여성에게 동일한 억압과 배제를 수행한다.

대하도록 교육받았고 그럼으로써 자신 역시 속물화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한 줄도 되지 않는 권력을 여성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면서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겐 더 많은 권력을 위한 경쟁만이 남는다. 실제로 가정에서 권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남성은 사회적 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자에 한정된다. 일반화해서 말하기엔 위험한 측면도 있지만, 자본주의하에서 강간은 이미 상품화된 성을 정당하게(?) 구매할 수 없는, 경쟁에서 낙오된 왜소한 남성들의 비참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또한 사회적 권력을 상실한 노년기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훨씬 고독하다. 그들이 배운 인간관계는 권력의 일방적 행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권력의 상실은 직접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모든 인간이다. 따라서 반성폭력 운동은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피해자 여성의 인권 보호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것은 성적분할, 성적배제를 바탕으로 성억압과 성폭력, 인간관계의 기형화를 구조화시키고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며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의 주체는 너무도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2. 운동의 방식

위에서 밝혔듯이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의 주체는 대학사회의 모든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한 개별화되고 무력한 주체들을 정치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대중운동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진 대중의 힘없이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남성적 대중운동에 대한 여성운동의 비판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대중운동에 대한 비판들은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초점은 대중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중운동, 관료적 수직적 동원라인으로 표상되는 대중운동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편향을 대중운동을 폐기하고 있다. 이는 비판의 원칙의 면에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대중운동에 대한 비판력과 여성적 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더해져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통해서 현실화된다면, 대중운동의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대중운동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대규모활동에 대하여

자보, 공청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폭력을 쟁점화 시켜 나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진행시켜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리즈 자보를 쓰는 활동은 활동을 하는 내부인자들에게도 남는 것이 많은 활동이 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여러 사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명 공개 사과문 등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학우들 사이에서 쟁점화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실천단을 꾸리는 것도 인자를 남기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서울대 사회대의 경우 총투표를 통하여 사회대 학생회칙에 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실천단을 사회대 학생회에 제안하여 2주간 활동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회와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유하고 이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기층에서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자들을 남기는 의미있는 결과를 남겼다.

(2) 소규모활동에 대하여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가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선의 영역으로 숨어버린다. 성폭력 사건을 부도덕한 개인이 저지른 사적인 일로 은폐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의 근절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식의 문제해결은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그대로 온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가해자를 인격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성폭력이 공론화되어 해결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선, 그리고 특히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단위에서는 특히 성폭력에 대한 소규모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결과를 막아내는 데 가장 기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해 있는 기층 단위일 것이다. 실천단 활동을 통해 남은 인자들을 통해서, 제안을 통해서, 특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단위에 대해서는 강제를 통해서라도 기층에서의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대규모의 대중활동이 과거의 문제로 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방기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3) 대안적 문화의 창출을 위하여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그 자체로 입법투쟁이며, 정치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일상에 뿌리깊게 침투한 폭력적인 문화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사회에서 성은 교환가치로만 표현되는 상품이 되어버리고 이는 인간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낳는다. 성은 포르노에서 광고에서의 야릇한 이미지로만 교육된다. 이러한 우리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대안적인 문화들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성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방식이다. 그것은 인간을 떠나서 존재

하는 성적매력이 풍만한 어떤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일 수 없다. 우리에게 침투 해있는 문화가 그러하다면, 그것이 폭력적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성에 대하여 대중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3. 나가며

성폭력 학칙의 제정, 그것은 살아나가면서 끊임없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학우들의 존재를 생각할 때,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학교당국과의 하나의 협상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그것의 의미의 측면에서나 그 동안 교수사회가 보여준 보수성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의 면에서도 많은 후회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철저히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제 1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별 / 첨 / 자 / 료

성균관대 [성폭력 징계위원회]

■ 성폭력 징계위원회 제안 과정

성균관대는 96년 도서관 성폭력사건 해결 이후 총여 내부에서 팀을 나눠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방향과 설치 경위를 알고자 몇몇 대학을 답사하였으며 사건 발발 이후 좀더 장기적으로 '학내 성폭력 특별학칙'과 '성폭력 징계위원회'를 학교측(학생과)에 요구하였다. 학칙에 대한 학교측의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가능성이 희박하여 개별적인 학칙을 만들면 규제해야 할 모든 상황을 학칙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그러나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학내가 혼잡한 상태였으며 학교측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었기에 학교측의 입장은 다소 변했으며 징계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사를 보였다. 그렇지만 물론 제안이 한 번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징계위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 구성원과 경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총여에서는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 요구했다.

■ 성폭력 징계위원회 발족, 문제점

97년 6월 학생과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원과 운영체계에 대한 간략한 문건을 작성, 해당 위원들과 총여학생회에 통보하였다.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성비에 있어서는 총여학생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5:5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간이 짧았던 것과 기본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고민이 저열한 수준이었으며 사건 접수 창고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상담소 또한 없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 전문가가 결여되어 있었다. 성폭력 징계위는 아직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우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홍보로 징계위 구성원들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여러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강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현실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

- 성폭력 관련 법률적 및 집행을 통한 고찰

I. 들어가는 말

법은 그 사회의 시대적 사고와 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법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반영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법의 변화를 통하여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서의 법의 변화란 단순히 법의 제정 및 법의 개정만을 일컫는 말이 아닌 좀 더 포괄적 의미로서의 법의 적용 및 해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에서 강간을 포함하는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학의 다른 논점과는 달리 모든 여성들을 그들의 지위, 가치, 신념에 관계없이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가부장적 우리 사회에서, 남성적 편견이 가장 가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성폭력을 중심으로 법상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간략히 논해보고자 한다.

II. 몸말

1. 성폭력의 개념

먼저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법상의 성폭력의 개념은 성폭력의 행위들을 각각 분리된 것으로 보고, 양분법적 접근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분리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성폭력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강간을 비롯한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 범죄를 각각 서로 다르고 분리된 행위로 개념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분법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각각의 성폭력 형태를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 폭력을 느끼는가의 여부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성립되는지 않는지를 따지는 질적인 접근만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기 삽입이 되지 않았지만 오랄 섹스를 강요했다거나, 이물질 삽입들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접근은 법현실에 있어서 여성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여성의 경험이 얼마만큼 배제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인 여성학적 연구 가운데 '성폭력의 연속선'이라는 개념이 유용하다. '연속선'이란 개념은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대, 강요 및 힘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강요 및 힘의 범위에 대해 자료를 수집, 제시하고 명명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과거의 성폭력이 강간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성폭력에 집중한 데에 대해 이 개념은 여성이 경험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학대와 폭행의 형태에 주의를 끌며, 보다 흔한 일상적 남성 행동과 극단적 성폭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의 이성애적 성관계의 경험은 동의 아니면 강간이라는 양극단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에서 압력, 강제, 그리고 힘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art는 이성애적 성을 (1)동의를 성(남성, 여성이 똑같이 원하는 경우) (2)이타적 성(여성이 거절할 경우 남성에게 미안하게 느끼거나 죄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경우), (3)순응적 성(안함으로써 오는 결과가 함으로써 오는 결과보다 나빠서 하는 경우), (4)강간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시한다. 즉, 이러한 연속선의 개념은 여성이 성에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을 때 느끼는 학대의 느낌을 타당화시켜 주며 여성은 당시에 또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경험을 강간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더불어 왜 여성의 규정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2.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통제와 그의 문제점

성폭력에 대한 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양분법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각 성폭력 행위 사이의 연속적인 면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면, 구체적인 법조항과 법 적용 및 해석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과 추행의 죄' 외에 새로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새로이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장애인에 정신장애인을 포함하게 하였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성하의 수사 및 재판권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보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 및 연하의 친족에 의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등, 특별법 이전의 상황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경험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개정 운동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조사 및 연구 또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법적 통제의 문제점을 강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성폭력 범죄 등에 있어서는 타범죄와는 다르게 법의 집행이 가해자의 행위보다 피해자의 행위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의 행위에 두어야 할 초점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 강제력의 증거 확보를 위한 저항여부, 가해자의 범의(犯意) 문제를 무시한 피해자의 정신분석 감정, 피해자의 이전 전력 등에 대해 두고 있다. 둘째, 확증의 특수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상처, 찢어진 옷, 목격자, 즉각적인 병원 검진 등이 요구된다. 셋째, 유죄 성립의 문제가 있음으로써 유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친고죄의 규정으로 인해 신고율이 낮다는 것이다. 다섯째, 강간법의 목적이 기본

적으로 여성의 성적자결권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절의 보호에 있음으로 해서 남성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데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전반의 가부장적 사고가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

III. 맺음말

우리 사회의 성에 관한 담론은 성기 중심적이다. 강간 등 성폭력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폭력은 단지 성기 삽입 유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은 일어난 사건들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통해 여성을 통제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묶어 놓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은 남성중심, 가부장제의 집약이다.

우리는 이때까지 성폭력에 관한 법적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성폭력에 있어서는 여성억 가해자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포괄하는 새로운 용어로 성폭력을 규정하고, 성폭력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형성됨에 주의해야 하며, 성기삽입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법은 그 사회의 시대적 사고와 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험에 주목하는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새로운 사고와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심영희, 1992, 청하
법여성학, 윤후정, 신인령, 1989, 이대 출판사
법학입문, 1998, 법문사

성폭력 사례모음

97년도 야태
대학내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 중
크게 공론화되었던
사례 두 가지를 모아보았습니다.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사례 -서울대 구교수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은 97년도 밝혀진 사건으로 교수와 제자라는 명백히 드러나는 권력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성폭력사건에 더욱 그 해결에 관심이 주목되었던 사건이다. 93년도에 밝혀졌던 신교수 사건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지닌 점은 성폭력의 정도(굳이 정도를 따지자면) 훨씬 심각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의해 신교수 사건과는 달리 구교수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성폭력임을 인정하며 구교수를 탄핵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 사건을 살펴보면 ...

구교수는 약대 교수이다. 약대는 채집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는 대학원생인 ○○○씨와 단 둘의 채집여행을 계획하고는 채집여행을 빌미로 ○○○씨를 여관으로 끌고가 강간하려 하였다. 이에 반항한 ○○○씨는 서울로 돌아온 후로도 계속 교수의 언어적 폭력(학위를 주지 않겠다는 등...)에 시달렸으며, 여러 해가 지나도 학위를 받지 못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학생은 ***씨 한명만이 아니다. 이렇듯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여 구교수를 고

소하자, 구교수는 ○○○씨와 다른 피해자들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구교수가 ○○○씨와 다른 피해자들을 죄가 없음에도 고소를 하였으므로 구교수에게 무고죄를 선고하였다. 이렇듯 구교수에게 무고죄가 선고되자 학교에서는 구교수를 직위해제시켰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명백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구교수가 결코 그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죄가 있는 듯 고소를 한 점에 대해 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지, 성폭력에 의해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해결과정에 있어서 학교에서 교수의 직위해제 처벌을 받은 것 역시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닌 교수의 신분 에 어긋나는 행위(무고죄...)를 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학내에서는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력관계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부도덕한 몇몇 개인이 저지르는 행위라고 여겨짐을 알 수 있다.

학생간의 성폭력 사례 -시립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MT사건

1. 사건개요

97년 10월 시립대 학우와 동대여대 학우가 각각5명 정도가 우이동 MT촌으로 MT를 가게 되었다. 저녁을 먹을 때를 전후해서(약9시경) 시립대 학우들과 동덕의 학우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오게 되어 정확한 인원 파악과 통제

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1시경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새벽 4시경부터 동덕 학우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을 과대에게 알리고 귀가하여 새벽 6시경에는 동덕의 학우들이 3명만 남게 되었다. 이에 시립대의 정범석(가해자, 정밀기계공학과 92학번)은 "너희 과, 원래 이러냐? 다 가네!"라고 시비조로 말을 하자 H(피해자, 동덕학우)가 "일이 있으면 갈 수도 있지 왜 그래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정범석은 기가 말리다는 표정을 하며 술을 마시며 다시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시비조로 계속하자 동덕의 학우가 "이런 MT는 처음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갑자기 정범석이 동덕의 학우들에게 일어서라고 소리치고, 동덕의 학우들이 일어서지 않자,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H의 머리를 잡아채고, 갓은 욕설(X같은 년, *발)을 퍼부었다. 이에 K(피해자, 동덕학우)가 말로 하라며 항의하자 K학우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구타하였다. 또 같이 있던 J(피해자, 동덕학우)가 놀라 쳐다보자 정범석은 "뭘, 끌어봐"라고 하며 주먹 등으로 동덕의 학우들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자고 있던 시립대 학우들까지 발로 차서 깨워 "이런 X년들이랑 조인트 올리면 다신 오지도 마.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무릎 꿇어"라고 소리쳐 일제히 무릎을 꿇게하고, 다시 동덕의 학우들에게 "다시 말해봐! 뭐 이판게 다 있어."라며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말리는 시립대 학우(96)들도 맞게 되었다.

시립대 학우들이 동덕의 학우들에게 계속해서 소리치고 같은 욕설을 퍼붓는 정범석을 끌고 가며 빨리 가라고 하였고, 동덕의 학우들이 자신들이 준비해온 코펠을 비우고 갈 준비를 하는 동안도 정범석은 "저런 X같은 년들 다

니는 학교랑은 상종도 하지마"라는 식의 욕설을 계속 하였다.

2. 사건 이후의 진행 상황

10월 6일 동덕의 여성행동위가 이 사건에 함께하게 되었고, 10월 9일 시립대학교 총여학생회에 이 사실을 알렸다. 10월 23일 동덕여대에서 여성행동위와 시립대 총여, 피해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가해자 대변인, 가해자, 96 과대표가 참석하여 첫 만남을 가졌다. 시립대 총여의 진행으로 절차에 따라 서로의 진술을 구술로 다시 듣고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해자 진술문의 「심하게 꾸짖었고」가 피해자 진술문의 욕설이었음이 확인되었고, 「달려드는 학우의 얼굴을 밀었다」는 부분은 가해자의 진술문과는 달리 폭력적인 행동이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가해자 정범석은 피해자 H학우의 머리카락을 잡았던 점과 놀라서 쳐다보기만 하던 J학우를 주먹으로 때린 점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K학우의 얼굴에 욕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상처가 난 것을 게임(폼바게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태도를 일관하였다.

여성행동위가 92학번이라는 고학번의 선배가 자기와 후배들 뿐 아니라 같이 MT를 온 여학우들에게까지 기강을 잡으려하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학우가 가해자에게 달려들 수 있었겠냐고 질문하였다. 시립대의 가해자와 대변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여자가 달려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당시에는 K학우가 달려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방에 있던 시립대 96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K학우가 달려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외의 머리카락을 잡은 부분과 가만히 있

는 학우에게까지 폭력을 쓴 부분은 자신이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후 가해자 대변인과 가해자는 가해자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게 된 원인이 동덕의 학우들이 3명 뿐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려고 하였고, 게임 도중에 동덕 학우가 「뭐 이런 MT가 다 있냐고 말하는 등」예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의 동기가 동덕 학우의 무례함에 있다는 태도를 일관하였다.

동덕 여성행동위는 가해자 정범석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동덕여대 참가 학생들 앞에 공개 사과와 자필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각 학교에서 비밀비제한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이 사건을 대자보화 하며 학보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가해자 정범석의 성차별적 사고를 반성하는 계기로 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와 그의 대변인은 「동덕 학우의 행동은 기본적인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었다. 후배가 선배에게 한번 고개 숙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과에서는 '선배가 팔을 부러뜨리는' 일이 있어도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그 학우가 우리 과였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 것이다. 사건 후에 전화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왜 받아주지 않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동덕의 요구안을 전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동덕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후 여성행동위는 「그러한 권위는 특정과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강요될 수도,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공식적인 그리고 공론화된 사과를 원했기 때문

에 더 이상의개인적인 연락을 바라지 않은 것이다. 토요일(10월 25일)까지 생각해보고 결정해 달라」 그러나 10월 25일 약속된 시간에 여성행동위와 시립대 총여와 비대위, 피해자가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가해자 대변인만이 나오으로써 그날의 모임은 파기되었고, 이 날 가해자 대변인은 동덕의 세가지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3. 사건에 대한 동덕여성행동위원회의 입장

우이동이라는 곳의 특성상 선발과 후발이 일관되지 않는 점은 일반적인 우이동 MT촌의 병폐이고, 새벽녘 동덕의 학우들의 귀가시 시립대의 학우들이 버스타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때 가해자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연합 MT의 공간은 그 MT에 참여한 개개인의 행동이 존재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지, 단지 남녀의 성비문제로 개개인의 의사와 행동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해자 정범석이 성비를 문제삼은 것은 MT에 참여한 여학우들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들이 즐기는 공간에 부차적으로 존재하여할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며, 이것은 전형적으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주체로 바라보는 성차별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우리는 성폭력을 성기삽입 여부만을 놓고 규정내리는 남성중심적인 성인식에 명백히 반대한다. 가해자 정범석이 피해여학우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였다는 상황과 자신이 고학번이라는 권위, 남성과 여성이 위계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억압적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자신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여학우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집단간의 성폭력 사례

- 이대 대동제에서의 고대생 집단 난동 사건

고대생들은 우선 영산줄다리를 위해 열을 지어 있던 이대 학우들 사이를 치고 달리며 심지어는 가에 서 있던 한 학우의 팔을 잡아 질질 끌고 다녔다. (약 3미터는 끌려 다녔다.) 나는 지킴이 친구들과 팔을 기고 그들을 막던 중 내 위로 고대생들이 밟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안경과 모자가 벗겨지고 너무 당황해서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들은 이런 나의 모습과 학우들의 모습을 즐기며 통쾌해 했다. [1996년 대동제 피해사례 중]

1996년까지 12년간 이화여대 대동제에서는 수많은 고려대생들이 몰려가 행사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대동제 마지막 날에 고대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폐막제가 진행될 시각에 이화광장에 모이는 조직력을 보이고, 고무장갑과 호루라기 등을 사전 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운집한 이들은 광장 전체를 점거하거나 지도자(?)의 구호에 따라 광장을 에워싸면서 이대생들의 접근을 차단하며 고대 응원가를 부른 후 기차놀이 대형을 짜고, 저지하는 이대생들을 뚫고 광장과 연결된 운동장에 돌진하여 진행 중인 행사를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대생들에게 많은 육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다. 많은 이대생들이 넘어지거나 깔려 밟히는 등 부상이 속출했고, 1996년의 경우 한 이대 학우가 팔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화여성위원회는 고대생집단난동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

다. 이화인들의 대동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사건당시의 비디오 상영이 진행되었고, 고대에서 향의 집회를 개최하여 이대 여성위원회, 고대 여학생위원회, 이대 총학생회, 고대 총학생회의 입장을 공표하였다.

이화여성위원회는 1997년 초부터 이대 총학생회와 함께 고대측에 예의 4자 테이블을 제안, 총 11차에 걸쳐 난동 근절을 위한 공동 논의와 실천 계획을 가져왔다. 이 사건의 재발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학기초부터 양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교양작업을 하는 예방을 위해 활동하였다. 이후 이대에서는 여성위원회와 총학생회가 함께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5월 중 자봉단인 '몽침이' 모집, 교양대회, 결의대회 등 집중적인 활동을 펼쳤다.

대동제에 들어서서 몽침이와 함께 총학생회 산하에 있었던 지킴이, 영상이, 꼬우미 등 대동제 자봉단들이 모두 결합하여 3일간 이화광장과 운동장 주변의 순찰 활동을 시작으로, 난동이 가장 심해 온 마지막날에는 모든 자봉단들이 영산줄다리기이 이루어지는 대동 폐막제 중 이화광장에 운집해 있는 남학생들을 감시하는 작업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고대 여학생위원회에서도 고대생 집단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단을 만들어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자봉단 뿐 아니라 이대와 고대의 학생처 교직원, 이대를 졸업한 선배님들, 교소님, 비번이셨던 수위아저씨, 이대앞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의 주인언니들 등 수많은 분들이 이화공간 지키기에 함께하였다. 무엇보다도 이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폐막제에 함께 참석했던 이화인들의 힘으로 1997년 111주년 이화 대동제는 고대생들의 집단 성폭력

난동 없이 여성공간 '이화인의 대동제'로 마감될 수 있었다.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칙

학내 자치권 확보의 기제로서의 학칙제정의 실험

현 재의 대학 사회에 있어서 '학칙'은 자치규약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채, 학교당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칙이란 대학 사회 모든 구성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외부 세력(학외 권력)에 의한 간섭없는 대학 스스로의 고유한 운영 원리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의 상실로 인해 이제 학칙 자체의 존재 유무의 논쟁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이나 기타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고 또 이를 위한 논의의 장이 제공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비민주성과, 학칙의 실제적 적용이 학교 당국에 의해 대학 사회를 구성하는 학우들을 강제하기 위한 일방적인 것으로 잘못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은 학생 자치를 탄압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기도 하여 학생 자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학칙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자치규약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자치 규약으로서의 학칙'으로 말함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출발한다. 대학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성적 담론의 재구성은 구성원에 의한 동의를 의미하므로 기존의 일방적인 권력층에 의한 '체택'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즉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경우 일방적으로 학교당국에 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의에 의해 학칙제정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교수, 교직원, 학생의 합의에 의해 학칙이 제정되므로 자치규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학칙적용의 대상 면에서

봤을 때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은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실제적으로 대학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학칙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제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규약으로 존재하는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가안에 대하여

-대학사회의 성적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칙(가안) 해설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는 대학내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예방과 처벌, 즉 그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 끝에, 우선 관련 학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서울대학교 여성모임연대가 1993년 '신교수사건(일명 우조교사건)'을 계기로 내었던 2차 성폭력 학칙 가안을 텍스트로 삼아 새로운 학칙 제정 작업에 들어가, 그 결과의 중간본이 현재 자문 중이다.

제정 작업에 있어서는 각 개념의 정의에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관점을 두려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아울러 각 학교의 학내 성폭력 사건을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 다룬 경험에서 비롯한 학내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 적용에 있어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오해들을 극복하고 그를 척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매우 섬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였다. 적용 과정에 있어 본 목적에 맞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

1. 목적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궁극적으로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대학문화는 학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반영되는 현실이 마치 당연한 듯 남성중심적 가치규범기준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 교수진과 직원, 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 근로 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근절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그에 대해 규정, 규제, 해결,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 학칙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학사회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아울러 본 학칙의 위상을 천명하는 전문이 따로 있어야 하고, 총칙에 있어서도 전술한 내용과 같은 학칙의 목적을 밝힘과 아울러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규정과 구체적 모델의 제시로서의 조

항이 따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의

환경형성폭력의 개념을 부분 차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근거상황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을 매개로 하거나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개인의 능력과 능률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거나 차별적,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 모욕적인 학업, 근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차별적 또는 공격적인 언동이나 타인의 작업에 대한 불합리한 참견들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상처주었을 때,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개인의 학업평가, 고용, 인사 또는 학교에서의 다른 일에 대한 참여의 조건에 영향을 기칠 때, 문제가 되는 행위 또는 발언의 빈도와 정도를 생각하여 지속, 반복될 때.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비의도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한다는 것인데, 지금껏 묵살되어왔던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기준으로써 유효하다는 원칙을 제시함이다.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이었는지 악의가 있었는지 하는, 결과적으로 위해를 가한 이의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피해를 받은 이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하기에 그러하다.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성은 남녀에게 다른 형태와 다른 의미로 구성되고 적용됨을 인정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상황과 느낌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학칙은 대학구성원들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자치로서 실천하는 대학문화건설의 한 걸음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담을 가장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 남성의 성적인 대상으로 여성을 사고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발언이나 행위, 옷차림, 신체, 성적활동에 대한 지나친 언급, 여성배제적인 불쾌한 성적 농담,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별정체성에 의한 여성의 가치에 대한 폄하식 발언, 성기 중심적인 공개적 행사, 음란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와 같은 것들이 있겠고, 이러한 규정들은 국내외의 여러 모범적인 연구의 예를 참조로 더 보강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되는 예들의 규제에 있어 방법적으로 다른 형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학칙이 '법'으로써 행사되는 무답의 맹점을 넘어서는, 규범으로서의 교육에 있어서의 철저함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자세한 자체규범의 제시의 형식은 학칙과는 별도의 지침서 구성 등으로 고려됨이 합리적이기도 하다.

3. 대상

학칙의 적용대상은 학교 구성원이므로 본 학칙 역시 소정의 기준으로 인정된 실질적 역할의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적용의 정확을 기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교수는 외부교수 이상을, 학생은 본교 재적생을, 교직원은 기성회직 이상을 포함하며, 외인교수 및 교환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본 조항의 적용시 기준시기는 사건 발생시이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라도 이에 포함될 경우에도 본 학칙의 사건 후 관련 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는데, 흔히 여겨지듯 가해자 처벌만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피해자 보호와 사건해결 노력에 있어서의 대학내 기구의 연대책임, 전 과정에 있어서의 각종 교육 등이 본 학칙에 의하여 담보될 것이다.

4. 학내 성폭력 특별위원회(가)

학내 성폭력 특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는 신고된 학내 성폭력 사건의 효과적인 해결을 책임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총체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이 정한 징계위원회 회칙에 따르며 이미 징계위원회가 만들어진 사례에서의 활동경과를 참조하여 더 고민할 지점이다. 각 학교의 상황을 스스로 고려하여 회칙의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겠으나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이 동수의 비율을 구성하며 각각의 경우 성비또한 동률로 하는 등 지위권력의 부당한 발현이라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미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를 맡고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과 피해자 보상과 그 치료를 전담하고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를 책임진다. 회칙 개정을 학내 성폭력과 관련한 여러 구성원들이 담당하며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현시키도록 한다.

5. 피해자 보호

다른 범주의 폭력과는 다르게, 성폭력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이 전가되거나 여러 단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슷한 구조의 또다른 폭력이 가해지게 된다. 이는 사건 후 특히 극심한 심신의 고통과 공포, 절망 등을 경험하는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배려되어야 하는 당연한 처우와 몫시도 거리가 먼 현실의 한 단면이다. 궁극적으로는 법을 다루는 각 계의 직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겠으나, 피해자를 직접 대하는 사람들부터 우선 명심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 발생하고 성폭력의 동기 중 많은 부분이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행사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가부장제 사회의 현재에서,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또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는 명확하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폭력 사건 징계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사건 징계과정은 물론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의 연대책임을 지어야 한다.

6. 신고인과 신고인의 보호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공감하는 주변인이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고, 피해자의 의사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앞에 명시된 수위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점들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7. 신고와 신고기구

사건의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기타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부, 지도교수, 학과(부)장, 대학장, 대학총장,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대표기구, 학내 여성관련 단체, 성폭력관련상담소(외부단체) 등에 신고의 의지를 갖고 접수된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담실에 신고되어야 한다.

8. 적용시한

기존의 형법에서는 사건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단계에서 시한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신의 후유증을 딛고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예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시효규정이 없다고 명시하는 등 그러한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9. 징계내용

일차적으로,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른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 기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재교육,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단체에서의 일정기간 봉사,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자보, 언론 등을 통한 공개사과, 금전적 피해 배상, 기존의 학칙상 처벌들(학생일 경우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 교수나 교직원일 경우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 등, 외부인의 경우 장제위원회의 가해자가 속한 구성단체와 접촉을 통한 징계 요구 등), 경고장 발송(경고장은 공개하며,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

덧붙여 가해자측이 각종 보복을 획책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된 명백한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징계사항을 불이행하고, 특히 재범일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징계는 본 학칙에 따르지만, 징계 이유는 전체 학칙 중 '품위를 손상한' 등의 요건에 성폭력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 명확히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10.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이 두는 편이 학칙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의미있을 것이다.

11. 성폭력 상담실 설치, 위상 및 업무

학교가 학교 내에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성폭력관련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 임명하도록 한다. 말뿐인 기구가 아닌, 실제로 그 임무를 책임지고 충실히 수행할 의지와 권위가 있어야 한다. 성폭력 상담실의 위상을 갖는 기구는 학내 어느 요소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상담원 교체나 채용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학내 기구로서 재정문제에 있어서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 상담실이 그 영역을 확장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갖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업무 내용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학내 교육과 홍보작업으로서 새내기배움터에서의 교육, 정규 성교육 강좌와 특별강연교육 개최, 각종 포스터와 소책자 발간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시적인 창구를 유지하고 전용상담원을 확보하여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이 있을 것이다.